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번호
687

2022. 3. 22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2. 3. 10.(박성찬 의원 등 8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및 제5조)
-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규정(안 제8조 ~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

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4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에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, 안 제7조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대상 시설과 사전·사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